

[별지 제5호서식]

장기요양인정조사표

1. 일반사항

①구 분	☐ 장기요양인정신청		☐ 개신신청		☐ 등급변경신청		☐ 이의신청	
②조 사 원	성 명		소속(지사)			조사장소		
③신 청 인 (본 인)	성 명				주민등록번호			
	주 소	(전화번호)						
	장기요양 등급				유효기간			
④참 석 인	성 명		신청인과의 관 계			전화번호		
⑤주거상태	☐ 자택 ☐ 요양시설 ☐ 단기보호시설 ☐ 양로시설 ☐ 요양병원 ☐ 병·의원 ☐ 기타 ()							
⑥동 거 인	☐ 없음(독거) ☐ 있음(신청인과의 관계:)							
⑦수 발 자	☐ 없음 ☐ 배우자 ☐ 부모 ☐ 자녀(며느리,사위 포함) ☐ 조부모 ☐ 그외 친척 ☐ 친구·이웃 ☐ 자원봉사자							
⑧현재 받 고 있는 급 여 (과거 3 개월간 평균 횟수 기재)	재가급여	☐ 방문요양 (회/월)		☐ 방문목욕 (회/월)				
		☐ 방문간호 (회/월)		☐ 주·야간보호 (회/월)				
		☐ 단기보호 (회/월)		☐ 복지용구(구입·대여)				
	시설급여	☐ 노인요양시설 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					
	특별한급여	☐ 가족요양비 ☐ 특례요양비 ☐ 요양병원간병비						
⑨희망급여 종류(복수로 표시 가능)	재가급여	☐ 방문요양 ☐ 방문목욕 ☐ 방문간호 ☐ 주·야간보호						
		☐ 단기보호 ☐ 복지용구(구입·대여)						
	시설급여	☐ 노인요양시설 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					
	특별한급여	☐ 가족요양비 ☐ 특례요양비 ☐ 요양병원간병비						
	1순위 희망급여	※ 희망급여 종류 가운데 가장 희망하는 종류 하나를 기재						
< 참고사항 >								

2. 장기요양인정 · 욕구사항

- 신청인의 기능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V표 체크
- 각 항목 아래의 빈칸에 특기사항을 기재

가. 신체기능(기본적 일상생활기능) 영역

- 1)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(장애의 원인)에 V표로 표시함.

항 목	기능자립정도			장애의 원인	
	완전자립	부분도움	완전도움	신 체	인지·행동변화 등
① 옷벗고 입기					
② 세수하기					
③ 양치질하기					
④ 목욕하기					
⑤ 식사하기					
⑥ 체위 변경하기					
⑦ 일어나 앉기					
⑧ 옮겨 앉기					
⑨ 방 밖으로 나오기					
⑩ 화장실 사용하기					
⑪ 대변조절하기					
⑫ 소변조절하기					
⑬ 머리감기					

2) 일상생활 자립도

장애노인(와상도)	☐ 정상	☐ 생활자립	☐ 준 와상상태	☐ 완전 와상상태
치매(인지증)노인	☐ 자립	☐ 불완전자립	☐ 부분의존	☐ 완전의존

※ 신청인의 평소 일상생활 자립정도를 종합하여 각각의 항목 해당란에 V표로 표시함.

나. 사회생활기능(수단적 일상생활기능) 영역

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란에 V표로 표시함.

항 목	기능자립정도			
	완전자립	부분도움	완전도움	수행하지않는다
①집안일 하기				
②식사 준비하기				
③빨래하기				
④금전 관리				

항목	완전자립	적은부분도움	많은부분도움	완전도움
⑤물건 사기				
⑥전화 사용하기				
⑦교통수단 이용하기				

항목	완전자립	부분도움	완전도움
⑧근거리 외출하기			
⑨몸 단장하기			
⑩약 챙겨먹기			

다. 인지기능 영역

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V표로 표시함.

항 목	증상여부	
	예	아니오
①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		
②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		
③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		
④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		
⑤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		
⑥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		
⑦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다		
⑧계산을 하지 못한다		
⑨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		
⑩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		

라. 행동변화영역

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V표로 표시함.

항 목	증 상 여 부	
	예	아니오
①사람들이 무엇을 흠꼈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		
②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		
③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		
④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		
⑤주위사람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		
⑥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		
⑦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.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,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		
⑧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		
⑨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땔 수가 없다		
⑩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순다		
⑪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		
⑫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		
⑬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		
⑭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행위를 한다		
⑮ 가스불이나 담뱃불,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리할 수 없다		
⑯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		

마. 간호처치 영역

최근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란에 V표로 표시함.

항 목	증상 유무		항 목	증상 유무	
	있다	없다		있다	없다
① 기관지절개관간호			⑥ 암성통증간호		
② 흡인			⑦ 도뇨(導尿)관리		
③ 산소요법			⑧ 장루간호		
④ 욕창간호			⑨ 복막투석		
⑤ 경관영양			⑩ 당뇨발간호		

※ 암성통증간호에 해당되지 않는 통증이 있을 경우 특기사항에 기록함.

바. 재활 영역

반드시 각 항목을 직접 신청인이 수행하도록 한 후 해당란에 V표로 표시함.

항목	운동장애 정도		
	운동장애없음	불완전운동장애	완전운동장애
① 우측상지			
② 좌측상지			
③ 우측하지			
④ 좌측하지			

항목	관절제한 정도		
	제한없음	좌/우관절제한	양관절제한
⑤ 어깨관절			
⑥ 팔꿈치관절			
⑦ 손목 및 수지관절			
⑧ 고관절			
⑨ 무릎관절			
⑩ 발목관절			

사. 복지용구

현재 보유하고 있거나, 보유하지 않았지만 희망하는 복지용구에 V표로 표시함.

용 구	보 유	희 망	용 구	보 유		희 망	
				구입	임차	구입	임차
①이동형 좌변기			①휠체어(수동형)				
②목욕 의자			②전동형 침대				
③보행 보조기			③수동형 침대				
④안전 손잡이			④욕창 방지 매트리스				
⑤미끄럼 방지용품			⑤욕창 방지 방석				
⑥휴대용 배변기			⑥이동 욕조				
⑦지팡이			⑦목욕 리프트				

*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급여이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의견이 있다면 특기사항에 기록함.

아. 지원 서비스

①주 수발자의 도움영역	☐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☐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☐ 정서적 지지	
②하루종일 혼자있다	☐ 예	☐ 아니오

자. 환경 평가

주거 상황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지 평가 (조명, 바닥상태, 욕실 및 화장실 환경, 부엌환경, 냉방과 난방, 개인안전, 환기 등)	☐ 양호 ☐ 불량

차. 시력 · 청력상태

①시력상태	☐ ㄱ. 정상 ☐ ㄴ. 1미터 떨어진 달력은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☐ ㄷ. 눈앞에 근접한 글씨는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☐ ㄹ. 거의 보이지 않는다 ☐ ㅁ. 보이는지 판단 불능
②청력상태	☐ ㄱ. 정상 ☐ ㄴ. 보통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, 못 듣기도 한다 ☐ ㄷ.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다 ☐ ㄹ. 거의 들리지 않는다 ☐ ㅁ. 들리는지 판단 불능

카. 질병 및 증상

신청인이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병에 대하여 해당란에 V표로 표시함.

①질병 및 증상	☐ 가. 없음 ☐ 나. 치매 ☐ 다. 중풍(뇌졸중) ☐ 라. 고·저혈압 ☐ 마. 당뇨 ☐ 바. 관절염 ☐ 사. 요통 ☐ 오. 골다공증 ☐ 자. 골절,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☐ 차. 암 (진단명:) ☐ 카. 기타 (진단명:)
②주요질병	
③등록장애	※ 장애의 종류 및 등급기재

<작성요령>

②주요질병: 「①질병 및 증상」에서 파악된 내용 가운데 신청인의 현재 기능상태 저하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비중이 높은 항목 한 가지만 기재합니다.

③등록장애: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장애인에만 기재합니다.